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97호 2017. 4. 27.(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7-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2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7-53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 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497호(2)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 - 77 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4. 2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7 - 1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7년 4월 27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연결도교 설치로 어민들의 편익제공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4-9번지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1,643㎡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7년 4월 27일 ~ 2032년 4월 26일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의 승인조건 : 붙임 참조

# 사 천 시 공 보

제497호(3)

## 승 인 조 건

1. **승인목적 준수** :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승인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승인** : 피승인자가 면적, 기간 등 본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본 승인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
  - 가. 동 시설물 운용 시,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폐기물), 죽은 물고기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 부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해양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다. 어선의 이·접안 및 유류 급유 시,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라. 주변해역을 이용하는 어선 등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상교통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마. 또한,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바. 권리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운용과 관련한 해역 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 **문화재 관련** :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97호(4)

5. **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 :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의 관리**
  - 가.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나.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승인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다.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7.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 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승인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승인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 :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승인(기간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9. **민원 해결 등** : 동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승인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10. **승인조건의 이행** :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

# 사 천 시 공 보

제497호(5)

##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534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합니다.

2017. 4. 27.

## 사 천 시 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4. 27. ~ 2017. 05. 11.(14일간)
3. 공고대상 : 출국 외국인 소유차량 5대(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055-83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497 호 (6)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국적	소유권이전 등록일	체류기간	출국일자	비고
19구6164	W*L*P*T* M*H*R*L*L*G* C*A*A*A	스리랑카	2012.04.27.	2016.02.05.	2015.04.03.	
경남70노3101	P*R*O*V F*R*Z	우즈베키스탄	2013.05.28.	2014.08.20.	2014.08.06.	
57소8055	Y*L*A*H*V G*N*S*E*	우즈베키스탄	2015.06.25.	2015.07.20.	2016.01.27.	
50머7294	S*U*U*O* K*U*N*D* *	우즈베키스탄	2015.06.23.	2015.06.20.	2016.04.27.	
경남30로2073	S*U*U*O* K*U*N*D* *	우즈베키스탄	2015.09.01.	2015.06.20.	2016.04.27.	